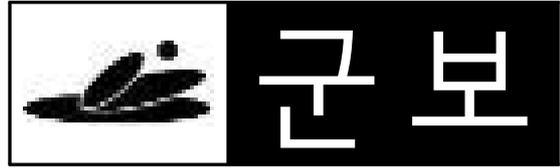


예산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539호 2019. 5. 30.(목)

규 칙

- 예산군 규칙 제1466호 :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 1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19 - 65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4
- 예산군 고시 제2019 - 67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7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19 - 755호 : 신조 공인 공고 20
- 예산군 공고 제2019 - 831호 : 도로의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22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19 - 795호 :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
- 예산군 공고 제2019 - 796호 :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3

회 람									
--------	--	--	--	--	--	--	--	--	--

제249회 예산군의회의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9년 5월 30일

예산군 규칙 제1466호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의회의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 6. 그 밖의 예산군의회의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예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고, 부위원장은 예산군의회부의장이 되며, 의회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고 후임 위원을 새

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서면 심사를 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 이상 찬성의 서명을 받으면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예산군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

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 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 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 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 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1. 제안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
- 예산군의회의원의 국외연수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가. 규칙명 변경

-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

나.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안 제4조)

-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
-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
- 심사위원회 정수를 기존 6인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다.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붙임) 마련하여 심사 기준 구체화

○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회기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가능

○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 *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외여비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라. 정보공개 확대(안 제9조, 제10조)

○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

마. 사후관리 강화(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 구체적인 환수금액 및 환수기한 등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 결과보고서 작성 시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한 증빙자료 첨부(별지 2)

예산군 고시 제2019-65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17.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93~4)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898-6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덕로 100-69	20190517		20090825	예산 상궁리와 당진 합덕읍의 행정구역 명칭 조합	
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150-1, 150-2, 150-3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수평로 64-8	20190517		20090825	예산 수촌리와 평촌리의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219-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윤봉길로 368-10	20190517		20090825	역사인물 매헌 윤봉길의사 반영	
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33-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로 63	20190517		20091113	지역 대표 산인 가야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가야산 이름을 반영	
5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257-6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08	20190517		20111205	추사고택을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특색을 반영	
6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32-9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예덕로 276-41	20190517		20090825	예산군과 당진 합덕읍의 행정구역 명칭 조합	
7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32-1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예덕로 276-43	20190517		20090825	예산군과 당진 합덕읍의 행정구역 명칭 조합	
8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32-10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예덕로 276-39	20190517		20090825	예산군과 당진 합덕읍의 행정구역 명칭 조합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9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리 842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길 207	20190517		20091113	행정구역명(금치리)을 이용하여 명명	
10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57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곡3길 33-65	20190517		20091113	행정구역명(두곡리)을 이용하여 명명	
11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57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곡3길 33-63	20190517		20091113	행정구역명(두곡리)을 이용하여 명명	
12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태리 463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신태길 88-6	20190517		20091113	용궁리와 신태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13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입침리 359-7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입침이목길 49-21	20190517		20091113	행정구역명(입침리)과 고유지명(이목)을 이용하여 명명	
14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 679-3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장신신흥길 207-11	20190517		20091113	장신리와 신흥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15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193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오추길 153	20190517		20091113	호음리와 오추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16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407-3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재호지길 171-8	20190517		20091113	행정구역명(호음)과 고유지명(재호지)을 이용하여 명명	

예산군 고시 제2019 - 6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25.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93~4)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9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91	20190524	신축	20091113	금오산 외곽을 경유하는 도로로 금오산을 이용하여 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 540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12-13	20190524	신축	20090825	역사인물 매헌 윤봉길의사 반영	
3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사석리 400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운로 279-21	20190524	신축	20090825	봉산면과 운산면을 연결하는 도로	
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178-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작로 70	2019052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관작리)과 방위를 활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계정리 213, 213-2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계정길 181-21	2019052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계정리)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546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계촌2길 105-16	2019052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계촌리)를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537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계촌2길 105-42	2019052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계촌리)를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537-1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계촌2길 105-46	2019052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계촌리)를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녹문리 940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녹문길 161-84	2019052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녹문리)을 이용하여 명명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0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238-6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곡1길 12-9	2019052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두곡리)을 이용하여 명명	
1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57-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마상길 43-38	20190524	신축	20091113	옛날 고려시대에 군대가 말을 매었던 곳이라는 옛 지명에서 유래	
1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131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배나다리길 185-60	20190524	신축	20091113	여름 홍수가 지면 사면이 물바다라 배를 타고 건넌다는 고유지역명 배나다리에서 유래	
1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 639-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배약길 86-45	2019052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서계양)과 뒷산에 약초가 많다하여 불리는 고유지명(배약)을 이용하여 명명	
14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762-2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2길 96-9	2019052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서초정)을 이용하여 명명	
15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송석리 164-4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송석월곡길 7	20190524	신축	20091113	응봉면 송석리와 오가면 월곡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16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하천리 750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신양하천길 163-27	20190524	신축	20091113	신양리와 하천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17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원리 107-1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원길 245	2019052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신원리)을 이용하여 명명	
18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472-18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장길 72	2019052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신장)을 이용하여 명명	

예산군 공고 제2019-755호

신조 공인 공고

예산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예 산 군 수

- 공인등록 사유 : 예산군도로명주소위원회위원장 공인 등록
- 등록공인 최초사용일 : 2019. 5. 16.(목)

등록 공인내역

【민원봉사과】

구분	공 인 명	규격및서체	인 영	신조(개각) 사유	비 고
신 규 공 인	예산군도로명주소 위원회위원장인	3.6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예산군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장 공인등록	

예산군 공고 제 2019 -831호

도로의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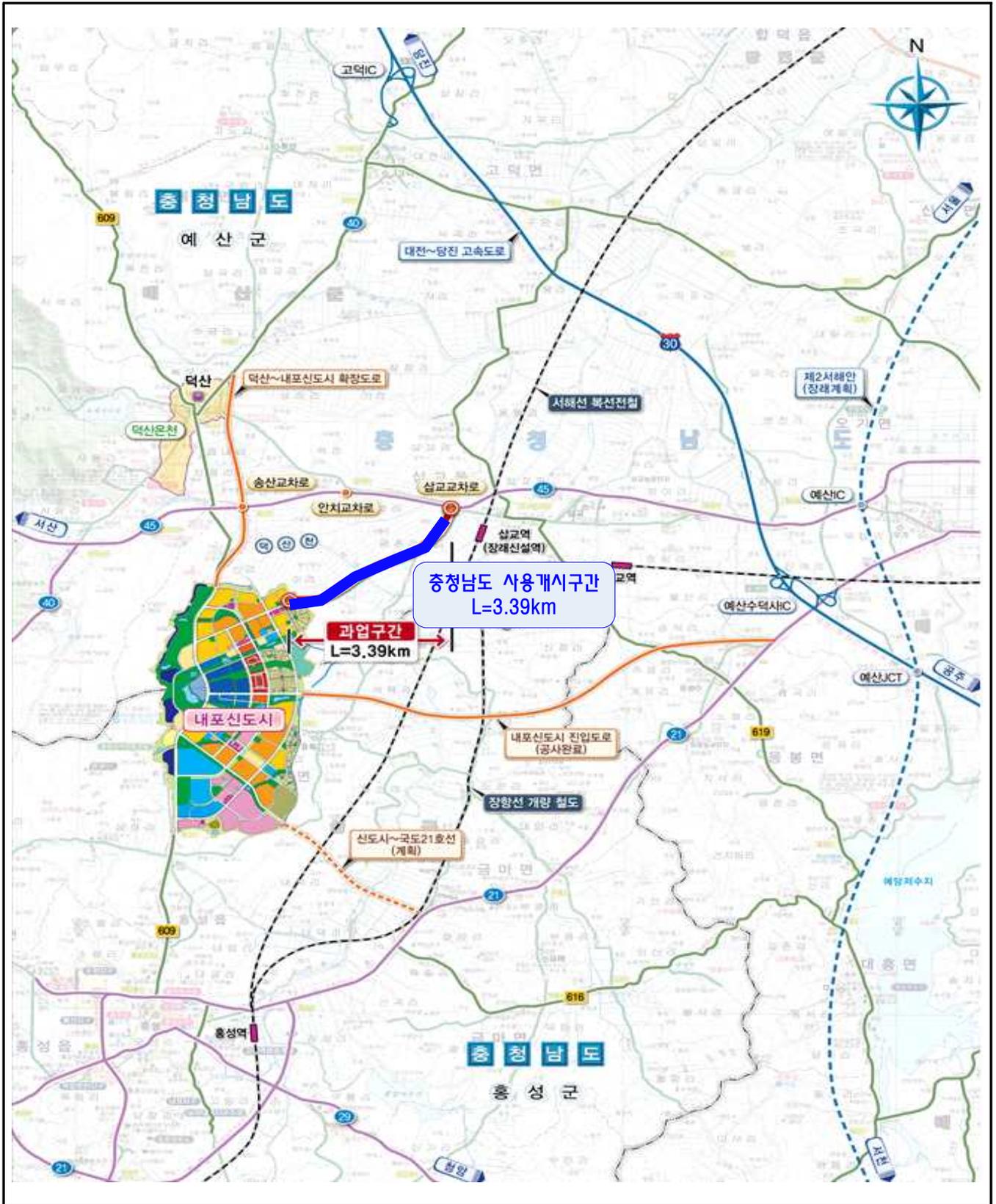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사용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예 산 군 수

1. 도로의 종류 : 군도
2. 노 선 명 : 제18호선(충남도청(내포2)신도시 진입도로)
3. 사용개시구간 : 충남 예산군 삼교읍 이리 637-38 ~ 삼교리 436-2
(3.39km, 양방향 4차로)
4. 중요경과지 : 예산군 삼교읍 평촌리
5. 전 용 구 간 : 사용개시 구간과 같음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개 시 일 시 : 2019년 5월 31일
8. 비 고 : 관계도면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041-635-7573)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현 황 도



예산군 공고 제2019-795호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19. 7. 1. 시행)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의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인용된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상 혼란 방지 및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함으로써 군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용어 정비(안 제1조 ~ 제3조)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급부터 3급까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4급부터 6급까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나. 일본식 한자어 용어 정비(안 제4조 ~ 제6조)

- 계리 ⇒ 회계처리
- 사력 ⇒ 자갈

다. 정비목록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용어 정비(3건)

해당부서	조례명	관련 조항	현행	개정
주민 복지과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제4호	중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농업 기술센터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호	지체·시각장애 1~3급, 청각·언어장애 1~2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내포문화 사업소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	심한 장애(1~3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 (4~6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일본식 한자어 용어 정비(3건)

해당부서	조례명	관련 조항	현행	개정
경제과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26조	계리	회계처리
수도과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9조	계리	회계처리
안전 관리과	예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 제4조	사력	자갈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참조 : 새마을규제개혁팀 ☎ 041-339-7233, FAX : 041-339-72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9. 5. 15. ~ 2019. 5. 29.(15일간)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우편발송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총무과 새마을규제개혁팀
(우편번호 32435)
- 전자메일 : yongho1003@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7233, fax : (041)339-7209

※ 붙임 :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중증”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2조(「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지체·시각장애 1~3급, 청각·언어장애 1~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한다.

제3조(「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장애인[심한 장애(1~3등급)]”를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4~6등급)”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농공단

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구분계리하도록”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으로 한다.

제5조(「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계리상황의 보고)”를“(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6조(「예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예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력”을 “자갈”로, “사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사용료”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수나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력”을 “자갈”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이용료와 사용료) ①·② (생략)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u>중증 장애인</u> 5. (생략) ④·⑤ (생략)	제7조(이용료와 사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장애</u> <u>의 정도가 심한</u> ----- ----- 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조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장애인 농가”란 경작자가 <u>지체·시각장애 1~3급, 청각·언어장애 1~2급인 농가</u> 를 말한다. 7. (생략)	제3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장애</u> <u>의 정도가 심한 장애</u> ----- ----- 7. (현행과 같음)

제3조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4조(입장료의 감면 등)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 입장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p>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심한 장애(1~3등급) 본인 및 보호자 1명, <u>심하지 않은 장애(4~6등급) 본인</u>]</p> <p>2. ~ 7. (생략)</p> <p>② (생략)</p>	<p>제14조(입장료의 감면 등) ① ----- ----- ----- -----.</p> <p>1.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p> <p>2.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제4조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6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u>구분계리하도록</u>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26조(특별회계의 설치) ----- ----- ----- --- <u>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u> --- -----.</p>

제5조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 사업의 <u>계리</u> 상황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나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9조(<u>회계처리</u> 상황의 보고) ----- ----- <u>회계처리</u> ----- ----- ----- -----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 「예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수나 토지의 점용료, 토석, <u>사력</u>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u>사용료</u> (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자갈</u> ----- ----- --- <u>사용료</u> ----- -----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u>점용료</u>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u>유수</u> 나 토지의 점용료, 토석, <u>자갈</u>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u>사용료</u> (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

② ~ ⑤ (생략)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생략)

②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갈 -----

-----.

③ (현행과 같음)

예산군 공고 제2019-796호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관련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19. 7. 1. 시행)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의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인용된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상 혼란 방지 및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함으로써 군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용어 정비(안 제1조)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급부터 3급까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4급부터 6급까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나. 일본식 한자어 용어 정비(안 제2조)

- 기장 ⇒ 기록

다. 정비목록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용어 정비(1건)

해당부서	조례명	관련 조항	현 행	개 정
교육 체육과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1~3급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6급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일본식 한자어 용어 정비(1건)

해당부서	조례명	관련 조항	현 행	개 정
수도과	예산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제11조, 제16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7조	기장	기록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참조 : 새마을규제개혁팀 ☎ 041-339-7233, FAX : 041-339-72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9. 5. 15. ~ 2019. 5. 29.(15일간)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우편발송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총무과 새마을규제개혁팀
(우편번호 32435)

- 전자메일 : yongho1003@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7233, fax : (041)339-7209

※ 붙임 :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1부.

예산군 규칙 제 호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예산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의 개정) 예산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장부의 기장)”을“(장부의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수납금의 취급과 기장)”을“(수납금의 취급과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4항 중 “기장한다”를 각각 “기록한다”로 한다.

제44조의 제목“(사업, 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와 기장)”을“(사업, 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와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장한다”를 “기록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장”을 각각 “기록”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와 기장)”을“(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와 기록)”으로 한다.

제87조 중 “기장·관리”를 “기록·관리”로 한다.

제88조 중 “기장·관리”를 “기록·관리”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기장·관리”를 “기록·관리”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면 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만 65세 이상 노인 3) 세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구비서류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 - 다둥이 행복카드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기준(제9조 관련)			[별표 1]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구 분	대 상	비 고
면 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면 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 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6급 장애인 2) 만 65세 이상 노인 3) 세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50% 감 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만 65세 이상 노인 3) 세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구비서류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 - 다둥이 행복카드		구비서류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 - 다둥이 행복카드	

제2조 「예산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장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기록) ----- ----- ----- 기록----- -----.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 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생략)

제40조(수납금의 취급과 기장) ① (생략)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수입 일계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 (생략)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제44조(사업, 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와 기장) ① 지출예산 집행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장한다.

② 관리자나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 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

기록-----

-----.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수납금의 취급과 기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기록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기록한다.

제44조(사업, 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와 기록) ① -----

----- 기록한다.

② -----

업출납원”이라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나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 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와 기장) ① ~ ③ (생략)

제87조(입고절차) 자산 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분과 납품명세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 (별지제45호 서식)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용을 재고자산 관리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발생품의 관리) ① (생략)

----- 기록 -----.

③ -----

----- 기록 -----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와 기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87조(입고절차) -----

----- 기록·관리 -----
-----.

제88조(출고절차) -----

----- 기록·관리 -----
-----.

제89조(발생품의 관리) ① (현행과 같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 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은 그 내용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97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용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장 관리한다.

② (생략)

음)

② -----

-- 기록·관리-----

-----.

제97조(재고의 수정) ① -----

----- 기록 -----
-----.

② (현행과 같음)